

2006. 5. 1(월)
제249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6. 5. 1(월)

제249회 임시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4월 14일

○ 회부일자 : 2006년 4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충청북도임시회

○ 2006. 4.21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가. 제안이유

○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새로 제정(2005. 7. 13)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의료원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의료원의 소재지와 명칭을 정함(안 제2조)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 → 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
- 지방의료원 임원의 구성을 정함(안 제3조)
 - 이사장(원장이 겸임) : 1인
 - 이 사 : 6인 이상 10인 이하
 -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함
 - 감 사 : 1인
 - 원장과 원내 직원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
- 지방의료원장 임용후보자의 최소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5조)
- 지방의료원의 운영·위탁규정을 명시(안 제6조)
 - 지방의료원의 진료수준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 김재준)

-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지난 2005년 7월 13일자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뀔에 따라 의료원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 임원의 구성,

원장의 자격기준, 운영의 위탁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등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 (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법 시행 후 (2005.9.14) 6월(2006.3.13)이내에 조례 및 정관을 정비 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필요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자격을 보다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함.
 - 지방의료원에서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안 제5조 제2항 제5호중 “관련분야의”를 삭제하고, “3년”을 “4년”으로 함

- 안 제5조 제2항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09호
----------	------------

제안연월일 : 2006년 4월 21일

제안자 : 이기동 의원외 4인

□ 수정이유

-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자격을 보다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함
 - 지방의료원에서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안 제5조 제2항 제5호 중 “관련분야의”를 삭제하고, “3년”을 “4년”으로 함.
- 안 제5조 제2항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함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 : 지방의료원에서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안 제5조 제2항 제5호 중 “관련분야의”를 삭제하고, “3년”을 “4년”
으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 표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원장) ① (생략)</p> <p>②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 2.(생략)</p> <p>3. <u>지방의료원에서 부장이상의 직위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u></p> <p>4. (생략)</p> <p>5. <u>관련분야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6. (생략)</p>	<p>제5조(원장)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p> <p>.....</p> <p>1. - 2.(개정안과 같음)</p> <p><삭제></p> <p>3. (개정안 4호와 같음)</p> <p>4. <u>4급이상 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사람</u></p> <p>5. (개정안 6호와 같음)</p>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충청북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번지
2.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

제3조(임원) ①임원은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을 겸임한다.

③이사는 법 시행령 제9조의 의하여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청북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인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5.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④원장과 원내 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원장) ①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6조(권한 및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이를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이를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 (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

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북도 지방공사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정관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 8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p>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p> <p>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때</p> <p>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p>	<p>법 제29조제1항 제1호</p>	<p>300만원</p> <p>150만원</p>
<p>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 상해 또는 기피한 자</p> <p>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p> <p>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p> <p>다.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때</p> <p>라.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p> <p>마.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p>	<p>법 제29조제 항제2호</p>	<p>300만원</p> <p>150만원</p> <p>100만원</p> <p>50만원</p> <p>50만원</p>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업) ①지방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인(지역의 보건소장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3.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⑤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⑥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⑨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 ①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⑥생략

제10조(원장) ①지방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한다.

④~⑦생략

제23조(지도·감독 등) ①(생략).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생략)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①~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⑤(생략)

부 칙

제2조(지방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지방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의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정관 및 조례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감사 및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감사 및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인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②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